한국한의학연구원 정관

(Ⅱ-1-1)

제정 1994.06.24.	개정 2004.07.29.	개정 2008.03.25.
개정 1996.07.26.	개정 2004.12.06.	개정 2010.06.17.
개정 1998.02.09.	개정 2006.03.28.	개정 2013.03.27.
개정 1998.05.30.	개정 2006.04.14.	개정 2014.08.19.
개정 2001.04.17.	전부개정 2006.12.22.	개정 2015.01.20.
개정 2003.12.22.	개정 2007.04.02.	개정 2015.02.16.
개정 2004.03.05.	개정 2007.05.3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소재지
제4조 사업
제5조 대학원대학 설치 및 운영
제6조 관할 연구회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임원의 정수
제8조 임원의 선임
제9조 임원의 임기
제10조 원장
제11조 감사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임원의 해임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15조 임원의 겸직
제16조 직제
제17조 직원
제18조 인력교류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 기본재산
제20조 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
제21조 운영재원
제22조 회계원칙
제23조 사업년도
제24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제출
제26조 출연금의 지급신청
제27조 회계감사 등
제28조 결산서 제출
제29조 외부감사
제30조 잉여금의 처리

제4장 부설기관 등
제31조 부설기관 등의 설치
제31조의 2 부설기관 <삭제>(2007.04.02.)
제32조 위원회

제5장 보 칙
제33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34조 산업재산권 등의 귀속
제35조 정관의 변경
제36조 규정의 제정
제37조 해산
제38조 이사회에 출석·발언
제39조 공고

부 칙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4.02.)(개정;2015.02.16.)

제 3 조(소재지)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두며, 제6조에 의한 관할 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분원, 해외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래 한의학 관련 문헌 및 한의학 이론에 관한 연구・분석(개정;2015.01.20.)
2.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임상・실험 연구
3. 한약의 규격화 및 한약제제 개발에 관한 연구
4. 침구학의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5. 국내외 전통의학 및 민간요법에 관한 연구
6.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연구사업(개정;2015.01.20.)
7. 한약재의 유효성・안전성에 관한 연구 및 검사(개정;2015.01.20.)
8. 한의학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개정;2015.01.20.)
9. 한의학 및 의학 등의 통합의료에 관한 연구(개정;2015.01.20.)
10.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개정;2015.01.20.)
11. 한의·약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및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개정;2015.01.20.)
12.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개정;2007.05.31.)(개정;2015.01.20.)
13.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인증 등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7.05.31.)(개정;2015.01.20.)

제 5 조(대학원대학 설치 및 운영) 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33조에 의거 부설 대학원대학을 설치한다.

②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대학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연구원은 대학원대학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교직원 임면 등 대학원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학원대학의 장과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6 조(관할 연구회) 연구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지도・관리를 받는다.(개정;2014.08.19.)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 7 조(임원의 정수) ①연구원에 원장 1인과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②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 8 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삭제> (2010.06.17.)

③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원자격이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신설;2014.08.19.)

제 10 조(원장) ①원장은 이사로서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 취임후 3월 이내에 임기 중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0.06.17.)(개정;2014.08.19.)

제 11 조(감사) ①감사는 연구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위법 또

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지하고, 연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가 임기만료,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7.)

제 12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 13 조(임원의 해임) 연구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연구원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4 조(임원의 보수) ①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임원의 겸직) 상근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16 조(직제) 연구원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한다.

제 17 조(직원) ①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한다.

제 18 조(인력교류) 원장은 법 제32조 등 인력교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 19 조(기본재산)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제 20 조(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임차, 무상양수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 21 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의 경비는 출연금, 자체수입금, 차입금, 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2 조(회계원칙)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3 조(사업년도) 연구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24 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2.)

제 25 조(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제출) ①연구원은 매 사업년도 개시 전에 당해 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연구회가 제시하는 매년도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의 목표, 성과,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연구원은 출연금 예산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03.27.)

제 27 조(회계감사 등) ①원장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원장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연구원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결산서 제출) ①연구원은 매사업년도 종료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매 사업년도 결산서를 다음 사업년도 3월 31일까지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잉여금처리안
4.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연구원 감사의 의견서
6.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 29 조(외부감사) 연구원은 사업년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30 조(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4장 부설기관 등

제 31 조(부설기관 등의 설치) 제3조에 따른 부설기관, 분원,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 및 폐쇄는 부지 및 건물의 확보, 인력 및 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을 사전에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의 2(부설기관) <삭제> (2007.04.02.)

제 32 조(위원회) 연구원은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제5장 보 칙

제 33 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4 조(산업재산권 등의 귀속) 연구원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룩한 발명·실용신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규정한다.

제 35 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 변경은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관할연구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제 36 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할 수 있다.

제 37 조(해산)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산한다.
1. 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이 불

가능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원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 03.27.)

③연구원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 38 조(이사회에 출석·발언) 원장은 연구원에 관한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9 조(공고)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업년도) 연구소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 3 조(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연구소 설립당시의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설립위원이 선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연구소 설립당시의 소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연구소 설립당시의 임원이 임기는 설립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④연구소 설립당시의 연구소의 직제에 관한 규정과 직원 임명 등을 위한 인사관계 규정을 설립위원이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연구소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위원이 작성하여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재산목록) 이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목록은 별표 1과 같다.

한국한의학연구소의 설립을 위하여 아래의 설립자는 현금 1,000,000원을 출연하며, 한국한의학연구소 설립위원은 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1994년 월 일 각각 기명 날인함.

설립자 : 서울특별시 세종로 1번지 대통령 김 영 삼

정관작성자 : 한국한의학연구소 설립위원

보건사회부	차 관	주 경 식
대한한의사협회	회 장	허 창 회
경제기획원	제2예산심의관	안 병 엽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조 병 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 수	홍 원 식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한국한의학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당시의 한국한의학연구소는 이 정관에 의한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정관 시행당시의 한국한의학연구소 명의로 행한 행위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한의학연구소는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본다.

④이 정관 시행당시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한의학연구소의 명의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명의로 본다.

제 3 조(제규정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당시의 연구소의 제규정에 "한국한의학

연구소” “연구소” “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원장”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원장은 제13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연구원의 원장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개정전의 정관에 의한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1998.05.30.)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1.04.17.)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3.12.22.)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4.03.05.)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4.07.29.)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4.12.06.)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기술연구회 및 기초기술연구회 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6.03.28.)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6.04.14.)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연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6.12.22.)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7.04.02.)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7.05.31.)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08.03.25.)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연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10.06.17.)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연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13. 03.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동법률이 시행된 날('14.6.29.)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승인;2014.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승인;2015.02.10.)

(별표 1)

재 산 목 록

재산의 구분	종 류	평가액(원)	출연자
기본재산	현 금	1,000,000	대통령 김영삼
계		1,000,000	